

# 셉티코 산업안전 환경 알리미

## 화학사고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신고(보고)체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.

안녕하십니까! 셉티코 산업안전 환경 알리미입니다.

이번 달 알리미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 및 산업재해의 신고(보고)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. 본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고 신고(보고)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니, 평소 숙지하셔서 비상 사태에 대비 또는 긴급한 상황의 업무에서 누락시키지 않도록 자체 비상조치 계획 등에 적용하여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	관련 법	사고 신고(보고) 기준	신고(보고) 시기	신고(보고) 내용	신고(보고) 기관	관련 법령 및 고시 등
화학 사고	화학물질관리법	1. 유해화학물질이 5L 또는 5kg 초과 유출·누출 <b>즉시 신고</b> 2. 인명피해가 없고, 사업장 밖의 환경에 영향이 없는 경우는 환경부예규 제632호, 별표 1의 신고 기준에 따른다. (첨부 1-1 참조)	즉시 신고 (사고 발생 15분 이내)	①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②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 ③ 사고 피해현황 ④ 사고 원인 물질의 환경 확산 현황 ⑤ 사고 현장의 응급조치 현황 ⑥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대피 현황 ⑦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	소방관서(119), 관할 지방자치단체, 지방환경관서, 국가경찰관서, 지방고용노동관서	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환경부예규 제632호, 별표 1 (즉시신고 3회 미이행시) : 영업 취소

- \*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사고 시 인명피해가 없고, 사업장 밖의 환경에 영향이 없는 경우 신고 기준은 **첨부 1-1**의 "화학물질 유출·누출 신고 기준" 참조
- \* 화학사고 시 신고(보고) 기관은 **첨부 1-2**의 "화학사고 시 신고(보고) 기관" 참조
- \*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시 신고 이후 보고의 내용은 **첨부 2-1**의 "산업재해 조사표" 참조
- \* 산업재해 시 신고(보고) 기관은 **첨부 2-2**의 "산업재해 시 신고(보고) 기관" 참조

### 산업안전 환경컨설팅

장외영향평가, 설치검사  
 PSM/이행평가/자체감사/위험성평가  
 위해관리계획서  
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
 위험물인허가  
 안전보건개선계획서

### 플랜트설계, 구매, 공사(EPC)

방폭/산업안전 EPC  
 전문소방설계 및 공사  
 산업플랜트  
 화공/전력 플랜트  
 원자력/발전플랜트  
 특수설계&컨설팅

### 산업안전 환경진단

안전관리대행  
 산업안전진단  
 연구실정밀안전진단  
 사업장 시설물관리  
 비산배출진단점검